

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우16304 /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) 4층 / 전화(031)243-5221,2 / 팩스(031)251-9770 / www.kgta.or.kr

문서번호 경기화협 제736호

시행일자 2019. 11. 5.

수신 각회원

(경유)

참조

선결		지시	
접수	일자 시간	결재 · 공람	
	번호		
처리과			
담당자			

제목 화물차(기중기) 과적제한 철저 준수 알림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수원시 건설정책과-20813호(2019.10.23.)와 관련입니다.

3. 최근 지하차도에서 높이제한을 초과한 화물차량이 불법으로 지하차도를 통행 하다가 지하차도 천장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, 각 회원님께서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「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 제5조(차량의 운행제한기준)을 준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시 동 규정 제24조(과태료처리)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이사장 고달원

